

# 자동차 보험의 유형별 보상 사례

## – 차량 파손의 경우 보험처리 –

김 희 중 <한국자동차보험(주)자동차보상부 차장>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크게 나누어 보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다치는 경우, 충돌 사고로 상대 차량이나 건물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 본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의 사고는 이른바 대인사고로서 운전자가 책임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가 금액상으로 크며, 형사처벌이 엄격하므로 운전자로서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두번째 유형은 본인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는 아니므로 첫번째 유형에 비하여 해결이 쉽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와 네번째 유형은 사람이 다친 경우는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손해액의 확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사고 해결도 어렵지는 않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대도시는 전국 어느 곳이나 차량 체증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이 파손되는 충돌·추돌 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당사자간에는 일차적으로 사고 발생의 책임 비율(과실비율)을 따지게 되지만,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서 장시간 지체하다 보면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게 되어 다

른 차량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은 보험 실무상 관례를 보면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큰 무리없이 과실 비율이 결정되어 별 다른 다툼없이 해결되는 것이 상례일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는 과실 비율이나 보상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기본이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관하여는 보험가입 차량 상호간에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차량 충돌 사고시에는 ‘객관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한 후, 보험가입 회사에 사고 통보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본인 차량이나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나 보험가입 회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덧붙여 사전에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내용과 보상 처리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그래서 이번 호부터는 차량 파손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 처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이해의 편의상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을 ‘차량손해’, 상대 차량의 파손에 대한 것을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차량 손해

충돌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등 자동차를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시킬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차량 손해 보험이다.

### 가.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

차량 손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의 유형으로는, 충돌이나 접촉 사고, 추락, 전복, 화재, 폭발 사고, 벼락, 비래물,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및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돌, 접촉 사고는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본인차량의 부속품이나 기계 장치 상호간의 충돌·접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례 I

철강회사에서 철강을 수송하기 위하여 8t 화물차량에 고철 10t을 적재하고 납품처에 도착하여 일단 적재물의 무게를 단 후, 좌회전하는 순간 적재물의 무게 중심이 적재함 상부에 편중되어 있어서 적재물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차량이 전도되지는 않았으나, 적재함 바닥(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었음)이 낚아 고정 볼트가 빠지면서, 적재함이 우측으로 떨어져 나가 좌측 Frame이 힘을 못이겨 위로 달려 올라가 휘어져 발생한 사고

이 경우에는 자동차에 적재된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자동차의 Roof에 충격을 가하여 Roof가 파손된 경우(이 경우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이라 할 수 있다)와는 달리, 적재함이 낚아서 Bolt가 빠지면서 적재함이 떨어져 나가는

힘에 의하여 Frame이 휘어진 경우이므로 소위 자물끼리의 충돌 또는 접촉 즉 ‘자동차에 장착된 부속품 및 부속 기계 장치가 상호 간에 충돌, 접촉함으로써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어 차량 손해 보험에서는 보상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의 도난 사고는 자동차의 처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자동차의 시가만큼 보상을 받게되는 소위 전부손해(전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난을 당한 후에도 차량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한 후 일정 기간(30일) 이 지난 후에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간에 APT 단지 내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카스테레오만을 도난당한 경우처럼 자동차 전부가 도난당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이것은 손해보험 원리상 Moral Risk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기를 당하여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차량 전부를 잃어버린 경우이기는 하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에 의하여 차량을 잃어버린 경우인지, 도난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있다.



#### 사례 II

오너드라이버가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 용산구 서빙고동 ○○ APT 앞 노상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가 손짓을 하면서 서라고 하고, 차량 뒷부분이 이상하니 내려와 보라고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뒤로 가보니, 이상이 없어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중, 다시 배기 관이 이상이 있다고 하여 다시 뒤로 가서 배기관을 보는 순간, 신원 미상의 그 남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

이 경우 신원 미상의 남자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고장이 나지 않은 차량을 고장이 난 것처럼 속여 차에서 내리게 하여 차량 뒤쪽의 배기관을 보게 한 후 동 차량을 타고 질주함으로써 ‘몰래’ 절취한 것은 아니나, 운전자를 속인 행위가 단지 절취의 수단에 불과하므

로, 형법상 ‘절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종합보험 약관상 도난에 해당되므로 차량 손해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된다.

#### 나.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차량 손해 보험에서는 직접 손해는 보상하지만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직접 손해는 차량 자체에 생긴 손해로서 보상 자동차가 파손되어 처리를 할 경우의 처리비나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파손된 경우 및 처리비가 차량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차량 시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손해는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영업상의 손실,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사고 전에 비하여 차량 시가가 떨어진 경우는 차량 가격 하락 손해를 말한다. ◎◎

<다음호에 계속>